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20343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빈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7. 14.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합10067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L(K) 사이에 L의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에 대한 2019. 1. 1. 8.자 납품에 따른 물품대금 510,806,460원의 채권에 관하여 2019. 1. 3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장 중 청구취지 제1항과 2022. 2. 11.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중 항소취지

제2항에는 ‘채권양도계약에 있어 채권양도인’ 겸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채무자’가 “C”로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갑36호증)를 비롯한 모든 증거서류(갑2호증의 1~5, 갑3, 11, 32호증 등)에는 “L”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선택적으로,

가. 주식회사 E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나. 원고에게 510,806,4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면 아래에서 6행(표 제외)부터 4면 4행까지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중 2면 아래에서 5행(표 제외)부터 3면 아래에서 4행까지의 각 “C” 부분 ⇨ 모두 “L”

나. 제1심판결 중 2면 아래에서 1행(표 제외)의 “F생” 부분

⇨ “N생”

다. 제1심판결 중 2, 3면 표 ‘어음번호’란의 각 “G” 부분

⇨ 각 “O”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L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에 기한 상환청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L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어음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상환청구권과 양수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L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9. 1. 31.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2항 기재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L 사이에 체결된 위 채권양도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거나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510,806,46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어음소지인으로서 취득한 ① 만기 후 상환청구권, ② 만기 전 상환청구권과 원고가 L로부터 양수하였다고 하는 ③ 대여금 채권, ④ 어음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와 L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만기 후 상환청구권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2019. 2. 11. 만기가 된 후 이를 지급제시하였는데, 그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배서인인 L에 대한 만기 후 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갑2호증의 1~5). 이에 원고는 L를 상대로 상환청구금액 525,365,06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08129 사건), 위 법원은 2019. 10. 16. 위 청구를 받아들여 L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상환청구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1. 7. 확정되었다(갑3, 11호증).

그러나 원고가 어음소지인으로서 취득한 만기 후 상환청구권은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인 2019. 2. 11.에 어음금의 지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1문), 피고와 L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9. 1. 31.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L에 대한 만기 후 상환청구권은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L는 2019. 1. 31.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서(갑6호증), 2019. 2. 7.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19. 2. 8. D에게 도달하게 하였는데(갑7, 28호증), 원고는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소급하여 기재되었다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2019. 2. 8. 갖추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L가 2019. 1. 3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 역시 2022. 4. 22. I와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서, 2022. 4. 25.이 되어서야 그 채무자인 L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바 있다(갑35, 36호증)}.]

2) 만기 전 상환청구권 관련

가) 어음법은 환어음에 관하여는 제43조 제2문 제2호에서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이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제77조 제1항 제4호에서 지급거절로 인한 만기 후 상환청구권만을 인정할 뿐, 만기 전 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D은 2019. 1. 31. 채무자로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3 사건), 위 법원이 2019. 2. 13. 위 신청을 받아들여 D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바 있다(갑10, 29호증). 그러나 ‘발행인의 파산’, 즉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만기 전 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D에 대한 위 회생절차의 개시는 이 사건 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후인 2019. 2. 13.에 비로소 발생한 사유라서 그에 따라 만기 전 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D이 발행한 액면 합계 2,971,869,000원의 어음 등이 2019. 1. 31. 부도로 처리되었고(갑34호증 중 62면), 이러한 지급정지에 따라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만기 전 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9. 1. 31. J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 중 분할번호 3, 4의 어음을 배서양도받음으로써 그 전후에 발생한 만기 전 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2019. 2. 1. J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 중 분할번호 1, 2, 5의 어음을 배서양도받음으로써 그 전에 발생한 만기 전 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취소채권자가 채권을 양수하고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양수한 때가 아니라 그 채권이 당초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어음소지인으로서 위와 같이 취득한 만기 전 상환청구권은 D이 발행한 다른 어음 등이 2019. 1. 31. 부도로 처리됨에 따른 지급정지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와 L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도 같은 날인 2019. 1. 31. 체결되었으며, 위 지급정지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L에 대한 만기 전 상환청구권도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기 후 상환청구권과 만기 전 상환청구권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각 상환청구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만기에 지급거절이 되기 전이라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만기 전 상환청구권의 발생사유가 생기기도 전에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수금 중 대여금 부분 채권 관련

I는 2018. 10. 1. L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으면서 어음할인을 하였고(갑37호증), 원고는 2022. 4. 22. I로부터 채권양도의 대상을 ‘어음할인의 원인채권과 어음금에 대한 추심채권’으로 하여

이를 양수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갑35호증).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는 위 어음할인을 통하여 L에게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L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I의 L에 대한 어음할인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I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 I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도(갑24호증), 위 어음할인을 하면서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용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어음의 어음금액 525,365,060원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26,092,918원(= 19,653,333원 + 6,439,585원)을 공제한 나머지 499,272,142원(= 525,365,060원 - 26,092,918원)을 지급하였을 뿐(갑31, 37호증, 을7호증), 지연이자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

나) 또한 D이 발행한 어음은 회생절차의 개시 전에는 시장에서 활발하게 유통되었고, 어음할인 업체에서 D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에 관한 광고를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하였으므로(을12호증), I 역시 그 전에 별다른 거래관계를 맺은 바 없는 L의 신용이나 자력을 믿었다기보다는 D이 발행한 이 사건 어음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어음할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만일 I가 L에게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하여 돈을 대여하였다면, 추후 L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을 때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어음을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I는 2018. 10. 1. L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당일에 곧바로 J에게 이를 배서양도하였다(갑2호증의 1~5).

라) 그 밖에 원고가 I의 L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전자어음할인의 업무흐름도(갑38호증)와 전자상업어음할인용 추가약정서의 양식(갑39호증)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거래약정을 하면서 어음할인을 하는 경우 업무흐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거나 그때에 사용하는 약정서의 양식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I와 L 사이의 법률관계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양수금 중 어음금 부분 채권 관련

원고가 2022. 4. 22. I로부터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어음금에 대한 추심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I는 2018. 10. 1. J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함으로써 그 어음금 채권을 상실하였으므로(갑2호증의 1~5), 원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I로부터 어음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운형, 판사 최현중, 판사 방웅환